

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9의 제목 “(중소기업팩토링)”을 “(중소·중견기업팩토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중소기업팩토링(이하 “중소기업팩토링”)”을 “중소·중견기업팩토링(이하 “중소·중견기업팩토링”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중소기업팩토링”을 “중소·중견기업팩토링”으로, “중소기업자”를 “중소기업자등”으로, “따른”을 “따른 자와 이 영 제19조의10에 따른”으로, “중소기업자별”을 “중소기업자등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중소기업자”를 “중소기업자등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중소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”를 “중소·중견기업팩토링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중소기업팩토링”을 “중소·중견기업팩토링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중소기업자”를 “중소기업자등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9제6항 중 “중소기업팩토링을”을 “중소·중견기업팩토링을”로, “중소기업팩토링에”를 “중소·중견기업팩토링에”로, “중소기업자와”를 “중소기업자등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중소기업팩토링”을 “중소·중견기업팩토링”으로, “중소기업자와”를 “중소기업자등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 중 “중소기업팩토링”을 “중소·중견기업팩토링”으로 한다.

제1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10(중소·중견기업팩토링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) 법 제23조의5 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”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9조의9(중소기업팩토링) ①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<u>중소기업팩토링</u> (이하 “중소기업팩토링”이라 한다)의 운용규모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.	제19조의9(중소·중견기업팩토링) ① ----- <u>중소·중견기업팩토링</u> (이하 “중소·중견기업팩토링”----- ----- ----- --.
② 기금이 <u>중소기업팩토링</u> 을 실시하기 위해 매입할 수 있는 <u>중소기업자</u> (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매출채권의 규모는 <u>중소기업자별로</u>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.	② ---- <u>중소·중견기업팩토링</u> ----- <u>중소기업자등</u> ----- ----- ---- <u>따른 자와 이 영 제19조의 10에 따른</u> ----- --- <u>중소기업자등별</u> ----- -----.
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<u>중소기업자</u> 재무건전성의 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으로 하여금 같은 항에 따른 매출채권의 매입 한도를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.	③ ----- ----- <u>중소기업자등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<u>중소기업팩토링</u> 을 받으려는	⑤ <u>중소·중견기업팩토링</u> 을 받으

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금에 신청해야 한다.

1. 중소기업팩토링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

2. 중소기업자의 경영·신용 상태 등에 관한 서류

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금은 중소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매출채권 채무자의 중소기업팩토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중소기업자와 매출채권 채무자의 경영·신용 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.

⑦ 기금은 중소기업팩토링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와 협의하여 매출채권의 매입 조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.

⑧ (생략)

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팩토링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려는 중소기업자등-----

---.

1. 중소·중견기업팩토링 -----

2. 중소기업자등-----

⑥ -----

---- 중소·중견기업팩토링을 -

----- 중소·중견기업

팩토링에 -----

-- 중소기업자등과 -----

-----.

⑦ ---- 중소·중견기업팩토링-

중소기업자등과 -----

-----.

⑧ (현행과 같음)

⑨ -----

----- 중소·중견기업팩

토링-----

-----.

<신 설>

제19조의10(중소·중견기업팩토링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) 법 제23조의5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”란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중견기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